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나고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900101-1000000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아산시 신창면시 100-50		
직 업	공무원		
전 화	010-1111-1111		
이메일	abs@police.com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나피고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 소	모름		
직 업	건설업		
전 화	010-2222-2222		
이메일	모름		
기타사항	계좌번호, 회사명(경대상사)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차용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4 년 1월 18일 10시 6분경 신창면 소재 ㅇㅇ카페에서 고소인에게 공사 대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4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과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피고소인은 마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차용이라는 가장을 빌려 우리를 기망하였습니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없음
② 관련 형사사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수사 유무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없음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 조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2월 13일

고소인 ____(인)*

제출인 ____(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산경찰서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